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 2004년 9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6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하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으로는,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안 제5조의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 동절기 근무시간을 09:00~18:00까지로 하며(안 제12조),
    -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안 제15조의2),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 조정하며(안 제17조),
  -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별표2).

□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개정조례안”은

- 2003년 9월 15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 2004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가 월 2회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 동절기 근무시간과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고,
  -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일수를 확대하고,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2004. 6. 24) 등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그 간 시행해 온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폐지되므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